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3. 5. 9.>

[대통령령 제31328호(2020. 12. 29.) 별표 1 제2호거목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제7조 관련)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및 업무내용

건설업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가. 토목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발하는 공사	도로·항만·교량·철도·지하철·공항·관개수로·발전(전기공사는 제외한다)·댐·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매립공사 등
나. 건축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다.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라.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제거·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저장·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	제철·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공사, 환경시설공사(소각장, 수처리설비, 환경오염방지시설, 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의 공사를 말한다), 발전소설비공사 등
마. 조경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에 따라 수목원·공원·녹지·숲의 조성 등 경관 및	수목원·공원·숲·생태공원·정원 등의 조성공사

	환경을 조성·개량하는 공사
--	----------------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건설업종	업무분야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1) 토공사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굴착·성토(흙쌓기)·절토(흙깎기)·흙막이공사·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선별·성토공사 등
	2) 포장공사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활주로·광장·단지·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 공사를 포함한다)와 그 유지·수선공사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공사, 시멘트콘크리트포장공사, 유색·투수콘크리트포장공사, 소파(小破)보수 및 덧씌우기 포장공사, 과속방지턱설치공사 등
	3)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가) 보링·그라우팅공사: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처리하는 공사	보링[boring: 시추(試錐)하는 것을 말한다]공사, 그라우팅[grouting: 균열이나 공동(空洞) 등의 틈새에 그라우트(주입액)를 주입하거나 충전(充填)하는 것을 말한다]공사, 착정공사, 지열공착정공사 등
		나) 파일공사: 항타(杭打)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하는 공사	샌드파일공사, 말뚝공사 등
나. 실내건축공사	실내건축공사	가) 실내건축공사: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실내건축공사(도장공사 또는 석공사만으로 시공되는

업		<p>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p>	<p>공사는 제외한다), 실내공간의 구조체 제작 및 마감공사, 그 밖에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등</p>
		<p>나)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p>	<p>목재창호공사, 목재 등을 사용한 칸막이공사, 목재구조물·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등</p>
<p>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p>	<p>1)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p>	<p>가) 창호공사: 각종 금속재·합성수지·유리 등으로 된 창 또는 문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p>	<p>창호공사, 발코니창호공사, 외벽유리공사, 커튼월창호공사, 배연창·방화문설치공사, 자동문·회전문설치공사, 승강장스크린도어설치공사, 유리공사 등</p>
		<p>나) 금속구조물공사</p> <p>(1)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천장·벽체·칸막이 등을 설치하는 공사</p> <p>(2)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도로, 교량, 터널 및 그 밖의 장소에 안전·경계·방호·방음 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공사</p> <p>(3) 각종 금속류로 구조물 및 공작물을 축조하거나</p>	<p>천장·건식벽체·강재벽체·경량칸막이 등의 공사</p> <p>가드레일·가드케이블·표지판·방호울타리·펜스·낙석방지망·낙석방지책·방음벽·방음터널·교량안전점검시설·버스승강대·도로교통안전시설물 등의 공사</p> <p>굴뚝·탱크·수문설치·셔터설치·옥외광고탑·격납</p>

		나 설치하는 공사	고문·사다리·철재프레임·난간·계단 등의 공사
		다) 온실설치공사: 농업·임업·원예용 등 온실의 설치공사	농업·임업·원예용 등 온실설치공사와 부대설비공사
	2)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가) 지붕·판금공사: 기와·슬레이트·금속판·아스팔트 싱글(asphalt shingle) 등으로 지붕을 설치하는 공사, 건축물 등에 판금을 설치하는 공사	지붕공사, 지붕단열공사, 지붕장식공사, 판금공사, 폴리염화비닐(PVC)가공 부착공사, 빗물받이 및 홈통공사 등
		나) 건축물조립공사: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과 부품 등으로 건축물의 내벽·외벽·바닥 등을 조립하는 공사	샌드위치판넬·ALC판넬·PC판넬·세라믹판넬·알루미늄복합판넬·사이딩판넬·클린복합판넬·시멘트보드판넬·악세스바닥판넬 등의 공사
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1) 도장공사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롤러·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	일반도장공사, 도장뿔칠공사, 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 전천후경기장바탕도장공사, 부식방지공사 등
	2) 습식·방수공사	가) 미장공사: 구조물 등에 모르타르·플러스터·회반죽·흙 등을 바르거나 내·외벽 및 바닥 등에 성형단열재·경량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뿔칠하여 마감하는 공사	일반미장공사, 미장모르타르공사, 합성수지모르타르공사, 미장뿔칠공사, 다듬기공사, 줄눈공사, 단열재 접착 및 뿔칠공사, 견출 및 코킹(caulking)공사, 내화충전공사 등
		나) 타일공사: 구조물 등에	내·외장 타일 붙임공사,

		점토, 고령토, 합성수지 등을 주된 원료로 제조된 타일을 붙이는 공사	모자이크, 테라코타타일공사 및 합성수지계타일공사 등
		다) 방수공사: 아스팔트, 실링재, 에폭시, 시멘트모르타르, 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토목, 건축구조물, 산업설비 및 폐기물매립시설 등에 방수, 방습, 누수방지 등을 하는 공사	방수공사, 에폭시공사, 방습공사, 도막(도료 도포막)공사, 누수방지공사 등
		라) 조적공사: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 등을 시멘트블록, 벽돌 등의 재료를 각각 모르타르 등의 교착제로 부착시키거나 장치하여 쌓거나 축조하는 공사	블록쌓기공사, 벽돌쌓기공사, 벽돌붙임공사 등
	3) 석공사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	건물외벽 등 석재공사, 바닥, 벽체 등의 돌붙임공사, 인도, 광장 등 돌포장공사, 석축 등 돌쌓기공사 등
마. 조경식재, 시설물공사	1) 조경식재공사	조경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공사	조경수목, 잔디, 지피식물, 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및 이를 위한 토양개량공사, 종자뿔어붙이기공사 등 특수식재공사 및 유지, 관리공사, 조경식물의 수세(樹勢) 회복공사 및 유지, 관리공사 등

	2) 조경시설 물설치공사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인 조목·인조암 등을 설치하 거나 야외의자·퍼걸러 (pergola) 등의 조경시설물 을 설치하는 공사	조경석·인조목·인조암 등 의 설치공사, 야외의자·퍼 걸러·놀이기구·운동기구 ·분수대·벽천(壁泉) 등의 설치공사, 인조잔디공사 등
바. 철근· 콘크리 트공사 업	철근·콘크리 트공사	철근·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 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 바리공사, 각종 특수콘크리 트공사, 프리스트레스트콘 크리트(PSC)구조물공사, 포 장장비로 시공하지 않는 2 차로 미만의 농로·기계화 경작로·마을안길 등을 시 멘트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 등
사. 구조물 해체· 비계공 사업	구조물해체· 비계공사	가) 구조물해체공사: 구조 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해 체공사 등
		나) 비계공사: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 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	일반비계공사, 발판가설공 사, 빔운반거상공사, 특수중 량물설치공사, 그 밖에 높 은 장소에서 시행하는 공사 등
아. 상·하 수도설 비공사 업	상하수도설비 공사	가) 상수도설비공사: 상수 도, 농·공업용수도 등 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 거나 상수도관, 농·공 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 는 공사	취수·정수·송배수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상수도, 농· 공업용수도 등의 용수관 설 치공사(옥내급배수설비공사 는 제외한다), 관세척 및 갱생공사, 각종 변류이형관 설치공사, 옥외스프링클러 설치공사 등
		나) 하수도설비공사: 하수	하수 등의 처리를 위한 기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	기설치공사, 하수·우수관부설(옥내급배수설비공사는 제외한다)및 세척·갱생공사 등
자. 철도·궤도공사사업	철도·궤도공사	철도·궤도를 설치하는 공사	궤광(軌框)공사, 레일공사, 레일용접공사, 분기부공사, 받침목공사, 도상공사, 궤도임시받침공사, 선로차단공사, 아이빔(I-beam) 및 거더(girder)설치공사, 건널목보판공사 등
차. 철강구조물공사사업	철강구조물공사	가)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제작·조립·설치하는 공사	교량 등의 철구조물의 제작·조립·설치공사
		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건축물의 철구조물조립·설치공사
		다) 대형 댐의 수문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대형 댐 수문설치공사 등
		라) 그 밖의 각종 철구조물공사	인도전용강재육교설치공사, 철탑공사, 갑문 및 댐의 수문설치공사 등
카. 수중·준설공사사업	1) 수중공사	수중에서 인員·장비 등으로 수중·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	수중암석파쇄공사·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계선부표 및 수중작업이 요구되는 항로표지설치공사, 수중구조물방식공사, 해저케이블공사, 투석공사 등

	2) 준설공사	하천·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	항만·항로·운하 및 하천의 준설공사 등
타. 승강기·삭도공사업	1) 승강기설치공사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해체·교체 및 성능개선공사	승객·화물·건설공사용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 무빙워크설치공사, 기계식주차설비공사 등
	2) 삭도설치공사	삭도를 신설·개설·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	케이블카·리프트의 설치공사 등
파. 기계설비·가스공사업	1) 기계설비공사	건축물·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위생·냉난방·공기조화·기계기구·배관설비 등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환기·공기조화·냉난방·급탕·주방·위생·방음·방진·전자파차단설비공사, 플랜트 안의 배관·기계기구설치공사, 기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 위한 제어기기·지능형제어시스템·자동원격검침설비 등의 자동제어공사, 시스템에어컨(GHP·EHP)공사, 지열냉·난방 기기설치 및 배관공사, 보온·보냉 등 열절연공사, 옥내급배수관개량·세척공사, 무대기계장치공사, 자동창고설비공사, 냉동냉장설비공사, 집진기공사, 철도기계신호공사, 건널목차단기공사 등
	2) 가스시설공사(제1종)	가) 가스시설공사(제2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	

		<p>사</p> <p>나)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변경공사</p> <p>다)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집단공급시설·저장소시설의 설치·변경공사</p> <p>라)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p> <p>마) 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p> <p>바) 고압가스배관의 설치·변경공사</p>	
<p>하. 가스·난방공사업</p>	<p>1) 가스시설공사(제2종)</p>	<p>가) 가스시설공사(제3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p> <p>나)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p> <p>다) 도시가스의 공급관과 내관이 분리되는 부분 이후의 보수공사</p> <p>라) 배관에 고정설치되는 가스용품의 설치공사 및 그 부대공사</p> <p>마) 저장능력 500kg 미만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p>	

	<p>바)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의 설치·변경공사</p>	
<p>2) 가스시설 공사(제3종)</p>	<p>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다음의 공사</p> <p>가)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 가스사용시설 외의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변경공사</p> <p>나)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 가스사용시설로서 5만 kcal/h이하의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변경공사</p> <p>다)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변경공사</p>	
<p>3) 난방공사 (제1종)</p>	<p>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7조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강철재보일러·주철재보일러·온수보일러·구명탄용 온수보일러·축열식 전기보일러·가정용 화목보일러·태양열집열기·1종압력용기·2종압력용기의 설치와 이에 부대되는 배관·세관공사</p> <p>나)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p>	

	<p>4) 난방공사 (제2종)</p>	<p>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7조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태양열집열기·용량 5만kcal/h 이하의 온수보일러·구멍탄용 온수보일러·가정용 화목보일러의 설치 및 이에 부대되는 배관·세관공사 나) 공사에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p>	
	<p>5) 난방공사 (제3종)</p>	<p>특정열사용기자재 중 요업요로·금속요로의 설치공사</p>	
<p>거. 시설물 유지관리업</p>		<p>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로서 다음의 공사를 제외한 공사 가) 건축물의 경우 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공사 나) 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의 경우 증설·확장공사 및 주요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다) 전문건설업종 중 1개</p>	

		<p>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개 량·보수·보강공사</p> <p>[대통령령 제31328호(2020. 12. 29.) 별표 1 제2호거목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p>	
--	--	---	--

비고

1. 위 표의 업무내용에는 건설공사용 재료의 채취 또는 그 공급업무, 기계 또는 기구의 공급업무(시공에 필요한 기계 또는 기구를 단순히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와 단순한 노무공급업무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 계약과 건설공사용 재료의 납품 계약을 같은 건설사업자가 체결하는 경우 해당 건설공사용 재료의 납품 업무는 해당 업종의 업무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위 표에 명시되지 않은 건설공사에 관한 건설업종 및 업종별 업무분야의 구분은 해당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재료·시설·장비 등의 유사성에 따라 구분한다.
3.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자는 완성된 시설물 중 해당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복구·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를 수행할 수 있다.
4.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는 해당 업종의 모든 업무분야의 공사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수중·준설공사업, 승강기·삭도공사업, 가스·난방공사업을 등록한 자 및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중 기계설비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는 주력분야의 공사만 수행할 수 있으며, 주력분야가 아닌 다른 업무분야의 공사는 수행할 수 없다.
5. 제4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중 기계설비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는 기계설비공사와 가스시설공사(제1종)가 복합된 공사로서 기계설비공사가 주된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가스시설공사(제1종)를 함께 수행할 수 있다.
6. 제4호에도 불구하고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중 기계설비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는 기계설비공사와 다음 각 목의 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다.

가. 난방공사(제1종)

나. 난방공사(제2종)

다. 플랜트 또는 냉동냉장설비 안에서의 고압가스배관의 설치·변경공사

7. 제4호에도 불구하고 가스·난방공사업 중 난방공사(제1종)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는 연면적 350제곱미터 미만인 단독주택의 난방공사(제1종)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기계설비공사를 함께 수행할 수 있다.

8. 제4호에도 불구하고 가스·난방공사업 중 난방공사(제2종)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는 연면적 250제곱미터 미만인 단독주택의 난방공사(제2종)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기계설비공사를 함께 수행할 수 있다.